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호
개정	1998.	4.	10	조례 제 115호
	1998.	6.	29	조례 제 126호
	1998.	10.	8	조례 제 146호
	2001.	3.	16	조례 제 323호
	2001.	5.	11	조례 제 326호
	2002.	1.	9	조례 제 374호
	2002.	6.	26	조례 제 406호
	2003.	3.	21	조례 제 432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10.	5	조례 제 777호
	2006.	1.	11	조례 제 793호
	2006.	4.	12	조례 제 811호
	2006.	11.	10	조례 제 841호(제명개정)
	2006.	12.	29	조례 제 85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7.	1	조례 제 88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8.	3	조례 제 893호
	2008.	5.	9	조례 제 942호
	2008.	10.	8	조례 제 956호
	2010.	4.	29	조례 제1084호
	2010.	12.	17	조례 제111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5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11.	3	조례 제1190호
일부개정	2013.	3.	6	조례 제127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32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5.	2	조례 제1375호
일부개정	2014.	10.	6	조례 제138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	10.	12	조례 제1608호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5.	14	조례 제1822호
일부개정	2018.	10.	31	조례 제1874호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1939호
일부개정	2020.	1.	6	조례 제1996호
일부개정	2021.	6.	30	조례 제214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	6	조례 제2266호
일부개정	2023.	1.	6	조례 제2370호
일부개정	2023.	6.	30	조례 제2406호
일부개정	2023.	12.	8	조례 제2464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	8.	2	조례 제2530호
일부개정	2025.	5.	2	조례 제260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위원회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06. 11. 10, 2008. 5. 9, 2022. 1. 6>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14, 2022. 1. 6>

1. 의회운영위원회 : 8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 8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 8명 이내
4. 경제환경위원회 : 8명 이내
5. 도시건설위원회 : 8명 이내

[전문개정 2014. 5. 2]

제2조의2(교섭단체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 6>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 의원이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9>

[본조신설 2006. 11. 10]

제2조의3(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과 정당 정책의 추진 모색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3. 6. 30]

제2조의4(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2조의3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29, 2010. 12. 17, 2011. 7. 8, 2013. 3. 6, 2013. 11. 1, 2014. 10. 6, 2016. 5. 27, 2016. 10. 12, 2017. 5. 4, 2017. 10. 2, 2018. 5. 14, 2018. 10. 31, 2019. 7. 1, 2020. 1. 6, 2021. 6. 30, 2023. 1. 6, 2023. 12. 8, 2024. 8. 2, 2025. 5. 2>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시민소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처인가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처인가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경제환경위원회

가. 경제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림축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미래도시기획국(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기후환경위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처인가청(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산업환경과), 수지구청(산업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도시건설위원회

가.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통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미래도시기획국(미래도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처인가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

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한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2022. 1. 6>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

④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신설 2022. 1. 6>

제5조(상임위원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08. 5. 9, 2011. 11. 3>

② 제1항의 임기 중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2022. 1. 6>

[제목개정 2008. 5. 9]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5. 10. 5, 2022. 1. 6, 2023. 1. 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2. 1. 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 시에는 당해 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상임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8. 5. 9, 개정 2011. 11. 3>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 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 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 6>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이라 한다) 수는 8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08. 10. 8]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 6>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 6>

[본조신설 2008. 10. 8]

제8조(특별위원회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3. 1. 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

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5. 9, 2011. 11. 3>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 시에는 당해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8. 5. 9, 개정 2011. 11. 3>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신설 2008. 5. 9, 개정 2022. 1. 6>

제10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1. 6>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5. 10. 5>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 5. 9>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31>

[제목개정 2023. 1.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선임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선임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8.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6. 29>

이 조례는 1998.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5. 10. 5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별표 중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각각 한다.

② 용인시 평생학습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6. 4. 12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10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85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7. 7. 1 조례 제88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공보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산업정책국”으로, 동호나목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동호다목 중 “도시환경사업소”를 “하수

도사업소”로, 동호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동호다목 내지 라목을 동호라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교통국에 속하는 사항

⑩ 및 ⑪ 생략

부칙 <2007. 8. 3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9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8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9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별표의 제3호 중 각각 다목을 라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②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자치행정·복지산업·도시건설위원장”으로 하고, 제3조의2제1항 중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분과위원회”를 “자치행정·복지산업·도시건설분과위원회”로 하며, 제8조제2항제2호 중 “내무분과위원회 및 산업건설분과위원회”를 “자치행정·복지산업·도시건설분과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1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공보관,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정보문화기획단”을 “공보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복지국”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산업정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동호라목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다목 중 “건설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2011. 7. 8 조례 제115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라목 중 “각 구청(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을 “각 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시과, 건축과)”으로 한다.

부칙 <2011. 11. 3 조례 제1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한다.

②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한다.

부칙 <2013. 3. 6 조례 제12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나목부터 라목을 다목부터 마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중 나목의 “경제환경국”을 “산업환경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다목의 “도시사업소”를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사업소”로 한다.

⑮ 생략

부칙 <2013. 11. 1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부칙 <2014. 5. 2 조례 제1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6 조례 제13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안전행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정경제국”을 “행정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문화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각 구청(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를 “각 구청(치인구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기흥구·수지구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도

시사업소”를 “교통관리사업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도시과, 건축과”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6. 5. 27 조례 제157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다목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6. 10. 12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행정문화국”을 “행정혁신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2호라목(중전의 다목) 중 “평생교육원”을 “법무담당관, 도서관사업소”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경제산업국”을 “투자산업국”으로 한다.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시주택국”을 “도시균형발전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4호라목(중전의 다목) 중 “도시디자인담당관, 교통관리사업소”를 “교통관리사업소”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위생사업소, 동물보호센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시균형발전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한다.

③ 부터 ⑧3 까지 생략

부칙 <2018. 5. 14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1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6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각 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를 “치 인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마목 중 “각 구청(사회복지과, 기흥구 사회복지과)”를 “치인구청(사회복지과), 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사회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라목 중 “각 구청(치인구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수지구 산업환경과)”를 “치인구청(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산업환경과), 수지구청(산업환경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아목 중 “각 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치인구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수지구 건축허가과)”를 “치인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22. 1. 6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6 조례 제2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30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46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아목 중 “치인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

축허가과)”를 “처인가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로 한다.

부칙 <2024. 8. 2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5. 2 조례 제260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의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으로 하며, 라목의 “재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마목의 “처인가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를 “재무국”으로 하며, 바목의 “읍·면·동”을 “처인가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하고 바목 다음에 “사.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을 “교육청년여성국”으로 하며, 나목의 “복지여성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다목의 “보건소”를 “사회복지국”으로 하며, 라목의 “도서관사업소”를 “보건소”로 하고, 마목의 “처인가청(사회복지과, 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도서관사업소”로 하며, 마목 다음에 “바. 처인가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마목의 “환경국”을 “기후환경위생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의 가목의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을 “안전정책관, 재난 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